

# 평택역 SK VIEW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대한제22호평택공업유타권리부동산투자회사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추가 임차인 모집은 [2021.08.27(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조건(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본 주택은 공급 유형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전산검색 및 관련행정기관 증명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며, 해당 통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제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지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특별 시행령 제40조)
-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1.05.17(월)]당 사업자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청약 및 공급계약 시 주택 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주택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주택 홍보관 입장 전 체온 체크 시(비접촉체온계)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평택역 SK VIEW 상담 전화☎1811-7469를 통해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잔여세대 공급내역

■ **금회 공급대상 : 1,328세대 중 잔여 225세대(특별공급 130세대, 일반공급 95세대)** [단위: m, 세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청년	신혼부부	세어형			
59A	59.8228	20.1493	79.9729	32.5729	-	1	61	-	62	2021년 11월말 (예정)
59B	59.5349	20.9604	80.4953	32.4162	7	-	32	-	39	
72A	72.8832	24.3406	97.2238	39.6841	136.9079	29	-	-	29	
72B	72.8832	24.3406	97.2238	39.6841	136.9079	-	-	-	3	
84	84.8863	27.6203	112.5066	46.2198	-	-	-	92	92	
합계	-	-	-	-	36	1	93	95	225	

■ **세어형 침실별 면적** [단위: m]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m)		
	인방	침실1	침실2
59A	14.4460	8.5286	9.8819
59B	17.8444	8.8406	8.5165

※ 상기 침실별 전용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인방 면적은 발코니 제외면적입니다

■ **공급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원]

공급유형	모집타입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층)	금회 공급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총액			
특별공급	세어형	59A	인방	3,693,000	33,237,000	36,930,000	158,000	61세대 (183실)
			침실1	2,181,000	19,629,000	21,810,000	93,000	
			침실2	2,526,000	22,734,000	25,260,000	108,000	
		인방	500,000	4,500,000	5,000,000	251,000	32세대 (96실)	
		침실1	300,000	2,700,000	3,000,000	148,000		
		침실2	300,000	2,700,000	3,000,000	171,000		
	59B	인방	4,258,000	38,322,000	42,580,000	182,000	32세대 (96실)	
		침실1	2,110,000	18,990,000	21,100,000	90,000		
		침실2	2,032,000	18,288,000	20,320,000	87,000		
		인방	500,000	4,500,000	5,000,000	289,000		1세대
		침실1	300,000	2,700,000	3,000,000	143,000		
		침실2	300,000	2,700,000	3,000,000	138,000		
신혼부부	59A	표준형	5,000,000	45,000,000	50,000,000	150,000	1세대	
		선택형1	4,000,000	36,000,000	40,000,000	179,000		
		선택형2	6,000,000	54,000,000	60,000,000	100,000		
	59B	표준형	11,134,200	100,207,800	111,342,000	231,000	7세대	
		선택형1	9,134,000	82,206,000	91,340,000	289,000		
		선택형2	13,134,000	118,206,000	131,340,000	131,000		
72A	표준형	12,585,400	113,268,600	125,854,000	262,000	29세대		
	선택형1	10,585,000	95,265,000	105,850,000	320,000			
	선택형2	14,585,000	131,265,000	145,850,000	162,000			
	표준형	12,585,400	113,268,600	125,854,000	367,000		3세대	
	선택형1	14,585,000	131,265,000	145,850,000	267,000			
	선택형2	16,585,000	149,265,000	165,850,000	167,000			
일반공급	72B	표준형	13,787,200	124,084,800	137,872,000	402,000	92세대	
		선택형1	15,787,000	142,083,000	157,870,000	302,000		
		선택형2	17,787,000	160,083,000	177,870,000	202,000		
	84	표준형	13,787,200	124,084,800	137,872,000	402,000	92세대	
		선택형1	15,787,000	142,083,000	157,870,000	302,000		
		선택형2	17,787,000	160,083,000	177,870,000	202,000		

- 자세한 임대조건 및 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2021.05.17(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어형의 경우 개별 침실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세대당 3인(각 1실)이 입주하며, 남자과 여자 혼성 입주는 불가합니다.

## 2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공급 유형별 청약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청년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8.27(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만 19세 이상 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8.27(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세어형	·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	·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함. - 3인 그룹 신청자 우선 세대 배정 - 1인 단독 신청자의 경우, 청약 신청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주체 임의로 세대를 그룹화하여 세대 배정(1세대 3인 정원 미달 시 그룹 배정까지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08.27(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함.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년, 세어형) 소득 기준 선정** [단위: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6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불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12월 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만)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주요 일정**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8.27(금)~09.05(일) 10:00~17:00	2021.09.06(월) 14:00	2021.09.07(화)~09.10(금) 10:00~16:00
방법	주택홍보관 현장접수	사업주체 추첨 (2021.09.06. 11:00)	주택홍보관 방문계약
장소	주택홍보관	당사 홈페이지	주택홍보관

- 청약은 주택홍보관에서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자격확인서류를 청약접수 시 함께 접수하시오니 유의 바랍니다.
- 추첨 전문업체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등 · 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임차인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등 · 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자격확인 구비서류**  
가-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무주택요건 확인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추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혼인 상태인 경우에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접수장소 비치)
	혼인 상태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		○	주인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 불가)
○		○	이혼사실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예비 신혼부부 중 과거 이혼 후 결혼을 준비 중인 경우(접수장소 비치)
○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 발급
혼인 예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여부 확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상세" 발급
혼인 예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	무주택 소명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분 포함)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2) 청년 특별공급 및 세여형 특별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무주택요건 확인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확인용,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접수장소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사실확인서	본인	· 이혼하여 혼인 중이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본인 소득 없는 경우 (추가)	○		무소득사실증명원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 본인의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			소득증빙서류	부모	· 본인의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	무주택 소명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분 포함)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3) 일반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무주택요건 확인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배우자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입대주택 신청 불가)
	○		위임장	-	· 접수장소 비치
해당자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무주택 소명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분 포함)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8.2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로 표시되어 발급된 서류는 무효이며, 추가 서류 보완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완료시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당첨자는 계약일에 지참하시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가입자	근로자	<p>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p> <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p> <p>※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p> <p>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p>※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p>※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p>	<p>① 해당직장/세무서</p> <p>② 해당직장</p>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p>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p> <p>※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p> <p>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p>※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p>①② 해당직장</p>

직장가입자	근로자	전년도 전직자	<p>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p> <p>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p>※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p>	<p>①② 해당직장</p>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p>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p> <p>※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p>	<p>① 해당직장</p>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p> <p>② 사업자등록증 사본</p>	<p>①② 세무서</p>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p>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p> <p>※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p>	<p>① 세무서</p>
	신규사업자	<p>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임차인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p> <p>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p>	<p>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p> <p>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p>	
	법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p> <p>②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p>	<p>① 세무서</p> <p>② 등기소</p>	
지역가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p>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p> <p>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p> <p>※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p>① 해당직장 /세무서</p> <p>② 해당직장</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p>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p>	<p>① 주민센터</p>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p>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p> <p>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p> <p>※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p>① 해당직장</p> <p>② 국민연금공단</p>	
	무직자	<p>① 비사업자 확인각서</p> <p>※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① 견본주택 비치</p>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지(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할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중 자녀를 임차인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 제출.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외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주택 홍보관 내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공동명의 신청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증빙 (공동명의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함)
	○		신분증	공동명의자	· 공동 명의자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공동명의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등 각 1부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8.2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공동명의변경 접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진행되며 정당계약 기간 이후에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법령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계약금/잔금	우리은행	1005-504-145315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1101)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주택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b>3</b>	<b>기타 주요사항</b>
<p>■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주택홍보관 내 청약신청 및 계약인행 시 본인 또는 대리인 1인 입장만 가능합니다.(동반 1인 입장 불가)</p> <p>■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세대면적, 세부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2021.05.17(월))를 준용합니다.</p> <p>■ 사업지 주소<span> </span>: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평택시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내)</p> <p>■ 주택홍보관 주소<span> </span>: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37-20 (구 하나은행)</p> <p>■ 홈페이지<span> </span>: https://www.pgskview.com</p> <p>■ 문의전화<span> </span>: 1811-7469</p>	

시공 SK에코플랜트(주)    신박 대한토지신박(주)    임대인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행 두리산업개발(주)